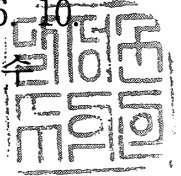


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196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6. 10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2020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총 괄

- 지출결정액 : 금1,561,461,000원(금일십오억육천일백사십육만일천원)
- 지 출 액 : 금1,300,033,450원(금일십삼억삼만삼천사백오십원)
- 이 월 액 : 해당없음
- 불 용 액 : 금261,427,550원(금이억육천일백사십이만칠천오백오십원)

나. 일반회계

- 지출결정액 : 금1,001,461,000원(금일십억일백사십육만일천원)
- 지 출 액 : 금740,033,450원(금칠억사천삼만삼천사백오십원)
- 이 월 액 : 해당없음
- 불 용 액 : 금261,427,550원(금이억육천일백사십이만칠천오백오십원)

다. 특별회계

- 지출결정액 : 금560,000,000원(금오억육천만원)
- 지 출 액 : 금560,000,000원(금오억육천만원)
- 이 월 액 : 해당없음
- 불 용 액 : 해당없음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

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관 련 서	예 비 비 배 정 과 목		지 출 결정일	지 결 정 액	지 출 액	이 월 액	집 행 잔 액	적 요
	편 성 목	통 계 목						
합 계				1,561,461,000	1,300,033,450	0	261,427,550	
화 원 읍	소 계			64,322,000	64,279,810	0	42,19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54,322,000	54,282,810	0	39,190	
	재료비	206-01		10,000,000	9,997,000	0	3,000	
논 공 읍	소 계			12,862,000	12,278,220	0	583,78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10,862,000	10,307,640	0	554,360	
	재료비	206-01		2,000,000	1,970,580	0	29,420	
다 사 읍	소 계			64,322,000	55,917,020	0	8,404,98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54,322,000	48,187,530	0	6,134,470	
	재료비	206-01		10,000,000	7,729,490	0	2,270,510	
유 가 읍	소 계			21,297,000	12,170,260	0	9,126,74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16,297,000	12,170,260	0	4,126,740	
	재료비	206-01		5,000,000	0	0	5,000,000	
옥 포 읍	소 계			32,161,000	32,160,370	0	63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27,161,000	27,161,000	0	0	
	재료비	206-01		5,000,000	4,999,370	0	630	

관 련 서	예 비 비 배 정 과 목		지 출 결정일	지 결 정 액	지 출 액	이 월 액	집 행 잔 액	적 요
	편 성 목	통 계 목						
현 품 읍	소 계			21,297,000	14,190,010	0	7,106,990	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16,297,000	9,364,090	0	6,932,91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재료비	206-01		5,000,000	4,825,920	0	174,080	
가 창 면	소 계			21,297,000	19,628,830	0	1,668,170	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16,297,000	15,968,720	0	328,28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재료비	206-01		5,000,000	3,660,110	0	1,339,890	
하 빈 면	소 계			12,762,000	6,144,870	0	6,617,130	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10,762,000	6,144,870	0	4,617,13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재료비	206-01		2,000,000	0	0	2,000,000	
구 지 면	소 계			12,760,000	11,047,070	0	1,712,930	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20. 3.9.	10,760,000	10,008,150	0	751,850	코로나 19 확산 대응 방역소독
	재료비	206-01		2,000,000	1,038,920	0	961,080	
농 업 정 책 과	소 계			4,781,000	4,781,000	0	0	
	민간인재 해방구 보상금	302-02	2020. 7.8.	4,781,000	4,781,000	0	0	이상저온(냉해)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지원
안 전 방 재 과	소 계			671,200,000	657,287,000	0	13,913,000	
	시설비	401-01	2020. 8.14.	560,000,000	560,000,000	0	0	'20.8.8.~8.10. 집중호우 관련피해복구비(치수사업)
	민간인재 해방구 보상금	302-02	2020. 8.31.	44,000,000	36,050,000	0	7,950,00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-공공시설 피해복구비
	시설비	401-01	2020. 8.31.	67,200,000	61,237,000	0	5,963,00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-공공시설 피해복구비

관 련 서	예 비 비 배 정 과 목		지 결 정 일	지 결 정 액	지 출 액	이 월 액	집 행 잔 액	적 요
	편 성 목	통 계 목						
일 자 리 경 제 과	소 계			19,100,000	16,412,000	0	2,688,000	
	시 설 비	401-01	2020. 8.31.	19,100,000	16,412,000	0	2,688,00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공 원 녹 지 과	소 계			161,000,000	134,261,000	0	26,739,000	
	시 설 비	401-01	2020. 8.31.	161,000,000	134,261,000	0	26,739,00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희 망 지 원 과	소 계			7,300,000	7,267,100	0	32,900	
	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(자체재원)	402-01	2020. 8.31.	7,300,000	7,267,100	0	32,90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건 설 과	소 계			145,300,000	4,276,000	0	141,024,000	
	시 설 비	401-01	2020. 8.31.	145,300,000	4,276,000	0	141,024,00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도 시 정 비 과	소 계			186,500,000	144,732,890	0	41,767,110	
	시 설 비	401-01	2020. 8.31.	5,800,000	5,800,000	0	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
	시 설 비	401-01	2020. 8.31.	180,700,000	138,932,890	0	41,767,110	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문 화 체 육 과	소 계			20,000,000	20,000,000	0	0	
	공 사·공 단 자본전출금	404-01	2020. 8.31.	20,000,000	20,000,000	0	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 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관 광 과	소 계			83,200,000	83,200,000	0	0	
	공 사·공 단 경상전출금	309-01	2020. 8.31.	57,410,000	57,410,000	0	0	'20.7.28.~8.11. 발생한 집중 호우 관련
	공 사·공 단 자본전출금	404-01	2020. 8.31.	25,790,000	25,790,000	0	0	사유·공공시설 피해복구비

□ 지방재정법

- 제43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